

##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1년 9월 24일 조례 제193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“전기안전관리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말한다.
3. “전기재해”란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전기화재,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전기재해 예방사업)**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
2. 장애인 가정의 노후 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
3.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용품 지원
4. 전기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
5.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,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, 이를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형태, 세대구성원, 장애유형 및 활동능력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전기재해 지원사업)**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##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1.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·기자재 또는 인력·비용의 지원
2.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·장비의 지원
3.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사업예산 지원)**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협력)**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와 전기재해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